

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 2차

□ 사업목적

- 공연 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/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□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대상기간 중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분야 대관 공연
 - * 기초공연예술분야 외 공연, 비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, 무료(초대) 공연은 지원 제외
(예시 : 대중가수 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토크콘서트, 개그 공연, 동호회, 학교, 학원, 협/단체의 목적성 공연,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기반 공연 등)
- 신청자격 : 국내 기초공연예술분야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
 - (단체/법인) 반드시 단체(법인) 명의로 신청(대표자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)
 - *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고유번호 중 한 가지를 보유해야 함
 - * (기획사) 직접기획 공연인 경우 신청 가능함. 단, 예술단체(인)과 출연계약서 제출 필수
 - (개인) 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)을 보유한 자
 - *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
 - * 2인 이상 그룹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'단체'명의로 신청 권장

- ① 지원신청 시 공연주체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. 제3자의 대리 신청 불가(단, 대관료 대리 납부는 가능함)
- ② 프로젝트 단체의 공연(법인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)은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'개인' ID로 신청하되, 지원신청사업명에 프로젝트 단체명 기재 필수

□ 지원내용

- 대관료(설치/리허설/공연/철수대관)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최대 90%(부가세 10% 제외)
 - 최종 지원결정액은 회차별 공모 배정예산을 고려하여 산출됨에 따라 신청액과 지원액이 다를 수 있음. 선정 건수가 많으면 단체별 지원액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.
 - 설치 및 리허설(준비대관) 일정이 1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,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하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(무대·조명·음향장비, 악기, 녹화·녹음, 냉·난방 등)에 한하며, 온라인 홍보비, 연습실 사용료, 주차권 구입, 포스터/배너 설치비, 티켓발권비, 외부 장비 임차료(조율비), 로비사용료, VIP대기실사용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
 -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내역 및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지원 대상 기간(2차) : 2026.05.01.~08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
1차	2026.01.01.~04.30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2차	2026.05.01.~08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3차	2026.09.01.~12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

* 공연 시작일은 반드시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

□ 지원규모

- 지원규모 : 단체(개인)별 최대 25백만원(부가세 제외)

- *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 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*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, 1개 단체로 간주함

□ 제외대상

(중복 수혜)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단체/개인
 - 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/개인 포함
 - ※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(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)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예술활동준비지원금에 선정된 경우 공모지원 가능
-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방정부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을 받는 단체/개인
 - (공동) 기획공연 포함 ※ 우선 대관, 대관료 감면 등 유무형 지원 포함
- 교원 연구 실적을 위한 공연(연구비 지원 공연)

(자격)
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또는 신앙인들로 구성된 단체
- 교육기관, 초·중·고교 및 대학·대학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
- 기념사업회 등 공연을 주된 활동으로 영위하지 않는 단체

(내용)

- 공연 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(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마술쇼, 버블쇼, 개그 공연 등)
- 해외 공연예술단체/개인의 내한 공연(월드투어 등) 및 초청공연
- 워크숍, 쇼케이스, 마스터클래스 등 목적성 공연
- 동호회, 학교, 학원 등 비전문예술(인)단체의 공연 (※ 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이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)
-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기반 공연

(공연장 자체 기획)

- 공연장 자체 기획 공연(공동 기획 포함)
- 지원신청단체(개인) 및 가족,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(자가, 임대, 위탁운영 포함)에서 진행한 공연(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임대계약을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)

(부정수급)

- 허위 대관 계약,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

(기타)

-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(티켓 오픈 및 판매 내역/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, 온라인 무관중 (비공개) 공연)
-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(문예진흥기금 공통)가 참여한 공연

- (신청 제한)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(미정산, 미반납),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(부정수급)
- (부적격 처리)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<지원신청 부적격자>에 해당하는 자
 - * △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, △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, △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△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, △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(표절, 임금체불, 명예도용, 저작권 미동의,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등)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

□ 지원조건

- e나라도움(www.bojo.go.kr)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·정산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, 「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」 의무사항 준수

□ 신청기간

- 2026년 9월 2일(수) ~ 9월 16일(수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(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)
 - * 접수 마감일 14: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만 신청 가능
 - * 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기본정보, 활동 이력 현행화를 완료한 회원만 신청 가능
 - * 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청렴이행확인서, 신청자격 체크리스트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지원신청확인서 확인·동의 후 신청 가능
 - * 사전검토 단계 결격사유 : 타 사업에 지원신청(시스템에서 사업선택 오류),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, 다른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,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오류, 기타 각 사업별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

□ 제출서류

제출기준	제출서류	유의사항
필수	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2차 공모 지원신청서	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※ 공연 증빙 팸플릿, 현장사진(관객) 등 필수 포함 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 ※ 지원신청서 내 '확인서', '서약서', '동의서'를 반드시 작성·첨부 (서명/날인 필수, 누락 시 결격) HWP 형식 날인 첨부 어려운 경우, PDF 변환 제출 권장 [파일명 : 1. 지원신청서_단체명]
필수	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(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) ※ 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, 미제출 시 지원 제외)	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, 다음 중 택1 - (필수) 계약서, 대관승인공문, 대관확정서 - (해당하는 경우 필수) 기획사 대행 계약서 ※ 기획사에서 대관을 완료한 경우 대관 관련 대행 계약서 제출 ※ 최초 계약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면, 최초 작성한 계약서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종 계약서 첨부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

		[파일명 : 2. 대관계약 증빙서류_단체명]
필수	③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(선금 등) (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, 미포함 시 지원 제외)	신청인(단체)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, 아래의①~④의 서류 중 순차적으로 가능한 방식 선택 제출 (* ①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②~④로 증빙하지 않음) - ① 전자(세금)계산서+계좌이체확인증 - ② 대관료/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/납부확인서(공연장 직인 필수)+계좌이체확인증 - ③ 현금영수증(홈택스) - ④ 신용/체크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 ※ 계좌이체확인증은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금액 및 이체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통장거래내역제출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격 ※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 포함)가 일치해야 하며,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※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(단체) 명의가 상이한 경우,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,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(증빙자료 제출) [파일명 : 3.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]
필수	④ 공연장등록증 사본	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, 신청인(단체)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※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. 공연법 제9조 1항에 의거 법정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등록증으로 제출해야 함 [파일명 : 4. 공연장등록증_단체명]
필수	⑤ 지원단체 증빙서류	(단체)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택1 ※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개인 및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(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) ※ 지원신청의 주체가 기획사일 경우(직접기획공연), 공연 주요 참여인력의 출연계약서 제출 필수 (개인) 예술활동증명 ※ 프로젝트 단체의 경우, 대표자 포함 구성원 3인 이상 제출 ※ 외국 국적의 국내 활동 예술인의 경우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제출 필수 [파일명 : 5.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]
필수	⑥ 공연 프로그램 소개 자료	공연 프로그램 구성 등 내용 확인이 가능한 공연 소개자료 1건 이상 제출(아래 항목 중 택1) - ① 리플렛 - ② 프로그램북 - ③ 예매사이트 예매화면 [파일명 : 6. 공연 프로그램 소개 자료_단체명]
필수	⑦ 통장 사본	신청단체 명의의 통장사본(계좌정보면) ※ 고유번호증, 프로젝트그룹은 단체 대표자 명의 통장 제출 [파일명 : 7. 통장 사본_단체명]
필수	⑧ 티켓 판매 정산서	티켓 판매 시스템 제공업체(인터파크, 예스24 등)의 직인 또는 워터마크가 날인된 정산서(담당자 연락처 포함) ※ 워터마크가 있는 정산서는 담당자 연락처 미기재도 인정함 ※ 엑셀, 한글 등 편집이 가능한 문서 파일 불인정. PDF로 제출 (해당하는 경우 필수) 티켓 판매 만 제3자가 대행한 경우, 대행 계약서 제출(티켓 판매 정산서 명의로 동일) [파일명 : 8. 티켓 판매 정산서_단체명]

- *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 [첨부파일]면에 첨부 제출
- * zip파일 또는 1개 파일당 100mb 이상 첨부 불가, 전체 파일 용량 제한 없음

□ 선정절차

일정	내용
2026. 9. 2. ~ 9. 16.	• 지원신청 접수
2026. 9월 ~ 10월	• 제출서류 검토(결격 여부)
2026. 11월	• 공공지원 수혜 여부 검토(중복 배제)
2026. 12월 중순	• 결과발표(예정)

□ 심의기준

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	•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•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공연 시작일 및 종료일) •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•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(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제외 대상사업 등 결격 여부 확인)
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	•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) 제출 여부 •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 및 증빙 여부 • 대관 계약(대관료 납부) 주체와 지원신청 주체의 일치 여부 •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여부 (신청금액 및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)
중복배제	• 공공지원 받지 않은 단체 여부

□ 문의처

- (주관처)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02-743-4166, 4177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음악전통팀 061-900-2251
- *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 10:00~17:00(점심시간 제외)

지원신청 유의사항

[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통사항]
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(바로그기)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.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